

5) 추후보도청구권

이는 반론보도청구에 유사한 것으로 오스트리아의 출판법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간법 제20조, 방송법 제91조).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라 함은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무죄판결, 검사의 무혐의처분은 여기에 해당하나, 법원의 공소기각, 면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나 검사의 공소권 없음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게 되고, 그 밖에 행사요건이나 절차는 모두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된다. (함석천, 2002).

4. 언론계의 예방책과 대응

이제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언론소송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한 기자는 “재벌언론이나 언론재벌이 아니고서는 배겨나기도,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자 개인은 더욱 고통스럽다. 소송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취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뿐더러, 요즘에는 기자에게 소송액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라고 독백을 하기도 한다.

언론인들의 언론소송 노이로제는 언론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취재행위와 보도를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보도를 원칙적으로 제약한다. 한 방송사는 2001년 9월 수십억 원대의 내기골프를 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기업 소유주 사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도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수형, 2002)

언론사 입장에서의 언론소송 예방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당사자에 대한 반론기회의 부여

우리는 흔히 오보, 즉 진실에 반하는 보도만이 언론소송의 대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당해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느냐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방송법 제91조 등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보다는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심증판구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김중훈, 2002).

따라서 이제 언론사는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피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보도의 신속성과 취재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반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A는 B다'라고 보도하면서 'A는 B가 아니라고 반론하였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의문 때문에 반론보도에 대한 비판이 많다. 당사자가 반론보도와 원상회복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하나의 보도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지나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베끼기식 보도의 지양

일선 취재기자들은 흔히 남의 신문이나 방송을 보거나 듣는 것이 겁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속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것은 특종보다는 소위 경쟁사에 물먹는 일이다. 그래서 신문의 경우 가판이 나오면 다른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낙종한 경우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 취재하여 따라잡기식 보도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선행보도의 일부를 베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베끼기식 보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중훈,

2002).

3) 익명보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흔히 익명보도의 원칙을 내세워 익명으로만 보도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익명보도와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니셜 처리를 하는 등으로 익명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도에서 지칭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한 보도라면 그것이 과연 언론보도로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9년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김중훈, 2002).

따라서 익명으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명예훼손 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익명보도 여부가 아니라 당해 보도내용이 후에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보도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라 하겠다. 즉, 당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도대상자는 익명보도의 경우에 실명보도의 경우보다는 언론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법원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보다 적은 액수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의 경우는 사인의 경우보다 실명보도가 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대법원은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김중훈, 2002).

4) 언론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

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총 511건이 중재위에 접수되었는데, 그 중 182건(35.6%)이 합의되었고, 223건(43.6%)이 취하되었으며, 62건(12.1%)은 불성립되었다. 직권중재는 35건(6.9%)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3). 취하된 것들도 대부분 중재과정에서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제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는 모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중훈, 2002).

5) 언론사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언론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사 차원에서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를 막는 1차적인 책임은 기자 개인과 언론사 자신에게 있다. 기자들은 스스로 명예훼손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를 신중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며 언론사는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언론사의 자기방어와 자율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언론사 내부 데스크와 편집인에 의한 자기검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이트 키퍼를 해야 할 데스크나 편집부에서 때로는 거꾸로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실 표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 변호사 기사 열람제

다행인 것은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변호사 기사열람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의 경우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이 언론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면서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 또는 preventive journalism)의 개념이 등장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언론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 스스로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수형, 2002).

방어 저널리즘의 핵심은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열람제다. 이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기사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지 심사하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사의 수정 또는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부인에 의한 언

론의 자기검열 또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 주요 신문사들이 앞다퉈 검열전문 변호사를 채용, 기사 사전열람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모두 12명의 변호사를 고용,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 전체를 스크린하도록 한 뒤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인쇄 전까지 해당데스크와 의견교환을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도 후 소송이 제기되면 검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판결이 나오면 신문사와 해당변호사가 공동배상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사 사전 열람제를 처음으로 본격 도입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996년 12월 변호사 기사 사전열람제를 공식 도입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위해 7명의 중견 변호사를 선임, 매일 매일의 초판기사 제작 때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했다. 조선일보는 2002년 4월 이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상근변호사를 채용, ‘상시적인 기사열람’을 시도했다. (이수형, 2002).

상근변호사는 매일 오후 조선일보로 출근해 편집국 가판 기사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기자나 데스크와 즉석에서 상의하고 토론한다. 조선일보는 상근변호사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기사열람 변호사를 7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다른 언론사들은 조선일보처럼 상근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9명 정도의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사전 기사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 사전열람제는 변호사의 조언내용이 다소 무미건조하고 부자연스러워도 기사의 허점을 줄이고 기사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증거에 입각해 자극적이지 않은 기사내용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선기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이 기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명예훼손에 대해 아는 법률지식이 기자들의 수준보다 크게 높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너무 ‘안전’만을 고려해 별 것 아닌데도 기사화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취재보도 방해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변호사 의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수형, 2002).

(2) 언론피해구제제도

이밖에 언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들 수 있는데,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는 장치다. 독자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언론중

재나 손해소송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손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조선일보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 MBC의 ‘시청자주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 모색단계에 있으며, 성과도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 독자인권위원회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동아일보의 경우 시행 1년 동안 정정보도 1건과 반론보도 1건을 심의 의결하고, 2건은 관련 부서와 신청자 간의 대화를 주선해 화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쳤다. 위원회에 대한 확실한 권위부여와 사건 견제장치의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수형, 2002).

(3) 법무보험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이 법무보험을 들고 있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해 2000년 11월까지 시행해 왔다. 연간 5,000만~6,000만원의 보험료와 함께 소송 시 200만~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건당 5,000만원~1억 원, 연간 3억~5억 원까지 보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와 ‘멀티미디어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해 유지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실제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액수가 적다는 이유에서 2000년에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스포츠조선이 2000년 10월 삼성화재와 ‘멀티미디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계약을 맺어 실시해 오고 있다. 기사보험은 언론사가 보험회사에 매년 일정액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기사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지만 기자들의 소신 있는 기사작성을 위해 기사보험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수형, 2002).

이밖에도 언론사들은 음부즈맨 제도의 도입, 독자위원회 또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수정 헌법에 “의회는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만약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든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때는 언론의 자유가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이다. 언론의 자유가 여타의 인격권이나 기본권

과 상충될 때 그 무게를 비교 형량하여 때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언론사와 언론인은 변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타율적 통제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만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등의 외적,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권혁남(2002),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김옥조(2001), 미디어 윤리(서울:중앙 M & B).

김재협(2002),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김종훈(2002), 언론사 입장에서 본 언론소송 대처방안,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제적 구제수단,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이수형(2002), 언론보도의 자율규제,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전원열(2002), 언론보도와 민사책임,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함석천(2002), 반론보도청구권, 방일영 문화재단,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서울:나남).

언론중재위원회(2003), 2002년도 연차보고서.